#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6

발의연월일: 2021. 1. 14.

발 의 자:김영주·장철민·김홍걸

송영길 · 김교흥 · 이동주

이용선 · 박 정 · 김영호

이재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 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 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

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직업훈련) ①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 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 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하다)----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 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 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 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 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 <신 설>

② (생략)

- (생 략)
  -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 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 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 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⑤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 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